

박형준 / 5월+6월 / 기출GS / 1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0	18	12	17	10.5	57.5	1	1.82%	5	55
562188	17.5	11	18	10	56.5	2	3.64%	4	
563528	15.5	10.5	18	11	55	3	5.45%	3	
565042	16.5	10.5	16.5	10	53.5	4	7.27%	5	
565128	15	10.5	17	11	53.5	4	7.27%	5	
562576	15.5	8	17	12	52.5	6	10.91%	5	
556423	14.5	11	15	11	51.5	7	12.73%	4	
563199	16	10	16.5	8.5	51	8	14.55%	5	
562176	12.5	12.5	16.5	9	50.5	9	16.36%	4	
556383	17	9	17	7	50	10	18.18%	4	
562320	16	11.5	14	8.5	50	10	18.18%	4	
563195	16	10.5	15	8.5	50	10	18.18%	4	
565364	16	9	15.5	9.5	50	10	18.18%	4	
562578	16	8.5	16.5	8.5	49.5	14	25.45%	4	
563520	15.5	10.5	14.5	9	49.5	14	25.45%	4	
563311	14.5	9.5	14.5	10.5	49	16	29.09%	5	
563443	15.5	6.5	17	10	49	16	29.09%	4	
563317	14	9	15.5	10	48.5	18	32.73%	5	
564844	16.5	6.5	16.5	8.5	48	19	34.55%	5	
562350	15	8.5	16	8	47.5	20	36.36%	5	
562563	15.5	10.5	17	4.5	47.5	20	36.36%	3	
565337	15	9	15.5	8	47.5	20	36.36%	4	
562508	17	8	14.5	7.5	47	23	41.82%	4	
561281	12.5	8.5	16	9.5	46.5	24	43.64%	4	
563029	13.5	8	17	8	46.5	24	43.64%	4	
563288	17	9.5	15.5	4.5	46.5	24	43.64%	5	
562734	14.5	10.5	16	5	46	27	49.09%	5	
565351	13.5	7.5	15.5	9	45.5	28	50.91%	6	
561602	14.5	9.5	12.5	8	44.5	29	52.73%	5	
562358	13.5	6.5	16	8	44	30	54.55%	5	
563474	15	7	17.5	4.5	44	30	54.55%	5	
565032	13.5	10.5	14.5	5.5	44	30	54.55%	5	
562403	13.5	6.5	14.5	9	43.5	33	60.00%	4	
563033	13.5	9	15	5	42.5	34	61.82%	3	
563441	13	6	16	7.5	42.5	34	61.82%	5	
563002	14	6	14	8	42	36	65.45%	5	
556219	13	6.5	13	9	41.5	37	67.27%	4	
562305	15	5	12	9	41	38	69.09%	5	
562397	15	2.5	15	8.5	41	38	69.09%	4	
562189	12	7	14.5	7	40.5	40	72.73%	4	
562342	12	10	10	7	39	41	74.55%	3	
562227	12	4.5	12	10	38.5	42	76.36%	5	
563344	12.5	5	13.5	7.5	38.5	42	76.36%	4	
564263	16	6.5	11	5	38.5	42	76.36%	4	
565403	14.5	7	12.5	4.5	38.5	42	76.36%	4	
562924	15.5	0	16	5.5	37	46	83.64%	4	
562408	10	8.5	11.5	6.5	36.5	47	85.45%	5	
562783	11	6.5	11.5	7.5	36.5	47	85.45%	4	
562207	13.5	3	11	7.5	35	49	89.09%	4	
562326	12.5	5	11.5	5	34	50	90.91%	4	
562354	13.5	0	13	6	32.5	51	92.73%	5	
562372	11.5	9	2	9.5	32	52	94.55%	5	
562349	4	0	18	8	30	53	96.36%	5	
562175	18.5	11.5	0	0	30	53	96.36%	4	
562469	14	0	0	0	14	55	100.00%	4	

박형준/5월/기출GS/1회/1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특허법 기출은 그 러프함을 경험해보지 않고 시험을 치를 경우 높은 확률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과목보다도 기출의 중요성이 높으니 이번 기회에 출제 스타일에 보다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은 간접침해 관련 논점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전용품의 공용성과 전용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성요소가 부가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경우 이용침해 관련 판례와, 전용성 관련 구성요소 부가된 경우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판례들을 통해,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주시면 됩니다. 판례가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 확실히 적어주시는게 득점에 유리합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균등침해 관련 간접침해 판례를 작성해주시고, 7점 분량에 맞게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논점은 대부분 잘 찾아주셨으나, 분량을 채우지 못한 답안이 다수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적당히 양 맞추어 써주시는 것이 방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설문 3

설문 3은 특허권자 갑의 전용품 양도로 인한 권리소진이 주논점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갑의 특허발명이 방법발명으로 주어졌으므로, 방법발명의 권리소진에 대해 두껍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들 통통하게 그리고 그에 맞춘 포섭도 충분히 작성해주신 경우 좋은 점수 드렸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간접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논점이었습니다. 판례는 간접침해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보호범위 숙부판단과 무관함을 이유로 비판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작성해주신 분들이 가장 물어보는 것을 명확히 작성했다고 판단됩니다.

논점을 놓치신 답안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존재한다는 점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소결

간접침해 논점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A급 논점인만큼, 충분히 대비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혹시 논점 놓치신 분들도 오답노트나 기본서에 표시하여 실제 시험에 출제될 경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1회/2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2번은 FRAND 선언 관련 논점으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그 중요도를 낮춰 준비하는 논점인만큼, 작성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판례를 높은 현출도로 작성해주신 답안이 많았습니다. 채점하면서 느낀점 작성해보겠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FRAND 선언을 한 특허권자가 허락받지 않고 실시한 자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FRAND 선언을 한 자의 특허는 무조건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오해하신 답안을 작성하셨습니다.</p> <p>원칙적으로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나, 합리적으로 실시로 산정하여 성실하게 협상 시도를 하는 자에게 침해금지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니, 결론 정도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FRAND 선언을 한 자의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특허법상 권리남용 관련 판례와 함께, 단순히 FRAND 선언한 것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흐름으로 작성하신 경우 가장 인상이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은 FRAND 선언을 한 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대해 묻는 문제로, 해당 논점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판례의 결론대로, 보전의 필요성이 흠결되어 가처분은 승인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답을 틀리셨는데, 결론 정도 알아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p> <p>또한,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검토해주신 답안이 가독성이 좋았습니다.</p>	

3. 소결

FRAND 선언과 같은 팽돌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출제될지 알 수가 없으므로, 대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도한 팽돌 대비는 자칫 강약조절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나치게 팽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경계하면서, 각자의 시간과 여유에 맞춰 최소한의 목차 또는 결론 정도만 숙지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형준/5월/기출GS/1회/3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3번은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자주 출제되는 A급 빈출 논점이므로, 많은 연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특허의 정정제도에 대한 단문 문제였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정정심판과 별도로 특허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도 작성하라고 한 만큼, 판례가 판시한 취지를 꼭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단문의 경우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독성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허 정정제도에 대한 일반론을 작성함에 있어, 성격이 다른 정정심판과 별도 정정제도 사이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작성해주신 답안이 가독성이 좋았고, 또한 주체적, 시기적, 객관적 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해주신 분들도 가독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정정심결 확정이 재심사유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법원은 정정 전 특허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법원의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재심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해당 전합 판례를 작성하지 않은 답안도 다수 있었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의 사안의 경우 특정 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주어졌으므로, 해당 판례를 꼭 작성해주셔야 하고, 함께 관련된 조문인 164조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문 판례 사안의 기본 구조로 작성한 경우가 가장 가독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결핵발명의 진보성 위반 극복조치 중, 진보성이 인정됨을 다룰 때, 반박할 수 논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성 판단방법 관련 판례들을 충분히 작성해주시고, 해당 판례들에 기초하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다각적으로 반박논리를 작성해주신 답안이 인상이 좋았습니다.

진보성 판단방법에 대한 일반론만 두껍게 작성하신 답안도 꽤 있었는데, 해당 판단방법을 기초로 어떤 반박을 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것이 사안포섭이니, 빼먹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할지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3. 소결

설문 1번과 같은 단문 문제 역시 내용은 잘 알더라도 처음 맞닥뜨릴 경우 한번에 가독성 좋게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시험이 누가 더 실제로 많이 아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자신이 아는 내용을 잘 적어내느냐를 평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1회/4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4번은 공지에외주장제도 및 국내우주, 조약우주가 혼합된 이익제도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이익제도의 경우 4번문제처럼 날짜가 여러개 나와서 매우 헷갈리게 하므로, 타임라인을 그리는 등, 실수를 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직접 권리자가 공개하지 않더라도, 제 3자의 공지를 용인할 의사가 있다면 의사에 의한 공지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복수의 공지가 있는 경우, 최초 공지로부터 1년 이내 적법하게 공지에외 주장할 경우, 해당 공지에외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결론은 잘 맞춰주셨으나, 논리 흐름이 일부 부정확한 답안이 보였습니다.

(2) 설문 2

설문 2-1의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을 물었으므로, 국내 우선권 주장이 주논점이었습니다. 대부분 논점을 잘 찾아주셨으나, 사안 포섭시에 이렇게 날짜가 주어진 경우, 그냥 “국내우선권 주장하면 된다.” 가 아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출원해야 하는지 날짜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량발명은 선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개량의 정도에 따라 최초공지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원 날짜를 정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문 2-2는 조약당사국 선출원이 존재하므로, 조약우주가 주논점입니다. 해당 설문 역시 날짜를 넣어서 등록받기 위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포섭하시는 것이 인상이 좋습니다.

3. 소결

기한이 굉장히 중요한 이익제도의 경우 날짜와 함께 출제될 경우, 타임라인을 명확히 잡지 않으면 굉장히 헛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우주와 조약우주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숙지하셔서 잘못된 결론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도 GS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Q 문제-1

I 실문(1)

5 18

1 문제 1 - 간접침해법 121조

직접 침해시 고지 개연성이 인정되면 경우 침해로 간주
한다. A의 중요 구성 (에 B를 부가하여 사용
하는 것이 침해인지 문제가 된다

2 물건 발명의 경우 - 법 121조 1호

물건 발명의 생안이 만 사용가능 물건은 생산 하거나 사용
하는 행위는 물건 발명 간접 침해이다

3 진용품의 요건.

① 공용성 과 ② 권용성 이 충족되어야 한다.

4 요건 ① - 공용성 충족 여부 (각각)

(1) 이용 침해 관련 위생적

정당하게 새로운 권을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호가 발생하는 별론 특히 발명
의 행위 외의 것에는 문개 없다고 한다

(2) 질도 - 직접 침해 개연성.

이용 침해로 특히 발명의 침해가 되는 점을 고려
하면 당성이 부가 가능성은 사실 만으로 결정 해서



제거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안의 경우

C에 D의 부차로 일체성이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없다
(+D)는 여전히 甲 특허 발명의 구성이다.

5 모건(3) - 권유성 특허 여부 (각각)

(1) 관련 위시제

권유성에 관한 특정한 경우 2로 인해 타인이 생각하지
않는 이상 권유성으로 처리한다

(2) 사안의 경우

D의 부차로 타인이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 없이 권유성라고

6 결론 - 2주장 부당

구성요소가 부가만으로, 쉽게 통칭 되고, 일체성 상실 주장해야 한다

7 답(1)

4

1 모건(1) - 권유성 특허 여부 (각각)

(1) 권유성에 관한 위시제

권유성이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균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시제는 간접하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균등한 권유성을 사상으로 배제할 것 아니냐

(2) 검토 - 직접하게 개연성



공정하게 특정하게 인정하고 같은 이상 한정하게
 취지상 합체로 볼 것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C를 C'로 바꾸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 부당안재
공정 배내 권유라고 할 것이다

2 요건② - 인용상 항구 여부 (각각)

(1) 관련 부수제

공정 배내 권유를 사용하는 전후 그러한 사용으로
 인해 타본드가 생겼다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상 여전히 인용상 부기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안의 경우

C'에 $A+BC'$ 부를 의미해 라본드가 확인
 되기 않은 이상 C'를 여전히 $A+BC'$ 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등 권이다

3 C' 권유권 여부 (각각)

①공정상과 ②권유를 모두 만족하면 C'는 권유권이다

4 질문 - Z의 판매 간접하게 성립

Z의 C'로 판매 하는 것은 공동하게 개명성
 고해서 간접 합체권 할 것이다

II 실문(3)

1 무제권 - 권리 소권 여부

경량한 권리가 특허 관련 물건은 양도하게 되면
권리 소권 되어 특허 발명이 특허권 소권이 되기
않는다. 방법 발명이 소권 여부를 살핀다.

2 방법 발명의 간접 침해 - 법 121조 2호

방법 발명의 사용에 반 사용자는 물건은 생산 양도를
을 하는 행위로 하여 간접 침해 성립 한다.

3 甲의 양도로 권리 소권 여부(1) 방법 발명 소권 여부 제1제

방법 발명이 권유이로 다른 발명자 차등은 둘이
유가 없으므로 방법 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을 직접하게 양도하면 권리 소권이 되기 않는다.

(2) 방법 발명이 실질적 구현된 물건 제1제

방법 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 이란.
다른 용도 없이 방법 발명에 만 쓰이고. 핵심적
구성 요소로서 비중이 큰 구성요소를 의미 한다.

(3) 방법 발명 소권 인정 논리 제1제

방법 발명이라는 것이 만일 물건 발명과 차이로
물리학적 없고. 방위시 특허 발명을 제외하려 는

A가 B가 되어. 각각은 자를 및 거래 안변
을 위해 인정 함이 타당하다.

(A) 사안의 경우

1) C가 실용적 구현 물건 여부 (각각)

C는 방법 별면의 권을 이루. 각각은 가
업고 핵심적 구성 권이다. 또한 권용권인 이상
비유가 있어 실용적 구현 물건이다

2) 대가 확보 가치 (각각)

경쟁한 권이라 무의 적법하게 2에게 양도하여
권이 소진 되었다:

4 결론 - C 실시 바람직

C는 권이 소진 되었으므로 C 사용은 바람직하다

IV 실습(4) 4.5

1 문제점 - 각각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결정에 이의 : 추1353

이 행하는 간판과 승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진통
인 C의 권리 범위 확정 확인하는 권리 지능
한기 문제가 된다

2 판례

각각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경우, 간판의 경우



권용으로 당연히 권리 범위에 특허로 이를 확인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한다.

3 바판

간접 합계는 합계 간극을 계도 이므로 권리범위
인정시. 과 인식 서해와 특허발명 범위가 부당
하게 확장 가능 문제 가 생 긴 다

4 검토 -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목적과 방법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권리범위로 외형적으로 확정
하는 것이 이 기 때문 에, 신속한 분쟁 해결 을
위해 권용 을 확인 을 하는 절차 로 명확 이
타당 하므로. 위 수 제 가 타당 하다

5 사안의 경우

물론 은 특허 발명 의 권용 이 므로 이를 확인
하는 의 의 가 없 고 할 것이 다

6 결론 - 특허성 (특성)

특이 간접 합계 분쟁 해결을 위해 (은 특정 특이
확인 하는 것 은 타당 하다, 특이 이 부 인 정 되 기
특성 인 정 된다

12

문제 -2

I 실문 (1)

4.5

1 문제 1 - 法 126조

표를 특허권자인 甲의 향배로의 향유권 행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이다.

2 甲의 표를 특허 (FRAND)의 의미와 유형 (각각)(1) 표를 특허 의미

공중 사용 기어를 특허 하기 위해 인정 하는 제도이다.

(2) 표원① - 공정 (FAIR) (각각)

공중 사용 기어를 인정 하기 위해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 표를 제정기에서 공중으로 개각되어
오전 특허 한다

(3) 표원② - 합리 (Reasonable) (각각)

표를 특허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인공성과 비교할 관련 타의 합리성 인정 된다

(4) 표원③ - 비차별성 (Discriminatory) (각각)

표를 특허로 특허 되기 위해 실사된 실정 등에
합리성의 자세에 임해야 한다

(5) 소결

甲이 표를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위무한 수행 한다면 합리적이 볼게가 된다



3 甲의 침해금지 청구 인용 여부 (각각)

(1) 표준 특허의 침해금지 청구 배타권 권리의 위계

표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만으로 배타권 권이라고 볼 수 없다. 침해자에게
까지 반드시 특허권 행사 하라, 해라 하는 관에

(2) 특별한 사정 위계

표준 특허권자가 실제라네게 표준 특허권 허용
해 많은 경우는 침해금지권이 허용 안된다.

(3) 사안의 경우

1) Z의 허락사도 (소극)

Z은 甲에게 허락 시도 하여 거절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소결

甲의 침해금지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안정적이다

II 실문(2) 3

1 권리 남용의 의미

권리 남용 중 모든 각종 행위는 상당한 행위
행위 경우 문제인데 표준 특허의 경우 문지 문지

2 甲의 침해금지 청구 모순적용 요리에 반하는지 (소극)

(1) 관청 위계

플로른 특허 카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에
 대한 기제를 가리기 어렵고. 비차별적인 이유로
 다하기 많은 특별한 사정 있어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1) 특허의 우선특위 만으로 권리상용여부 (소극)

플로른 특허로 특허권자는 사실 만으로 특허권 행사가
 모순되는 정당이익을 볼수 없다

2) 비차별적 행위에 대한 모진 훈육 (소극)

같은 특허 플로른 특허에 대하여 실사권은 사소한
 것을 강제하는 특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 2 극량 부당

같은 실사권 실정 시로 많은 실사행위로 부당
 가 권리 상용이라고 볼수 있다

II 실문 (3)

45

1 물레짐 - 힘해지기 가리분. 원사 관행법 300조 2항

힘해를 키키 하해 은 특이 시도가 있을 경우
보편 필요성도 우해 힘해지기 가리분 가능하다.

2 힘해지기 가리분 요건

① 외보 리 해 리 나 ② 보편 필요성이 필요 하다

3 요인 ① - 피보전 해권 구복 (적극)

앞사람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에게는 法
126조기 황해권기 황권이 인정된다

4 요인 ② - 복귀권유성 구복 (소극)(1) 관련 배제

복귀권유성 인정할 경우, 황해권기 황권을 인정
하는 조과는 별개로 황해권기 가처분 행사시
본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허용하지 않았다

(2) 질문 - 비차별적 특성 및 공정성

복귀권유성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므로
황해권기 황권과 다른 별다른 관련 주제 황해권기
가처분 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사안적 경우

특히 가처분 승인 신청에 개해대 FRAND
사안을 한 이상 본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 가처분 승인 개별 예상.

FRAND 선언한 이상 공공 이익 기여 요건을 고려하여
본권 필요성이 없으므로, 각각 결정하여 허용해서는
안된다

문제-3

1 정령 제도 의 취지(1) 정령 제도 의의

특허 권리가 사후적인 구제를 위해 스스로 발명을
을 보장. 정령 제도 이다.

(2) 제5제가 실시할 취지

특허는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에게 주는 보상으로 그 기여와 크라 불리다
방안은 사회 윤희 보전하에 허용하고 있다

2 정령 심판과 별도 정령 제도(1) 정령 심판 법 136조

특허권과 스스로 특허를 부정 권명 하는 제도로
심판원에 제기 가능 하다

(2) 별도 정령 제도 - 정령 행위 법 133-2조

부호 등록이나 특허권 갱신 개시 권리 거부 하는
정령 행위 제도 이다

(3) 인정 취지 제5제

정령 심판에 전수에는 특허권으로 관행에만 정령
행위는 불행과 함께 같이 심리 의무로 강조
하고 회송하게 인정 가능 하다.

3 정정심판과 정정 항의 공종권.

모든 특허권과권이 항구하며, 특정 1323의 2가
조 1363의 기권은 권한내 권한내 정정항의 범위
 다 반이 공복된다. 정정항의 사소한 항의
 항의. 실질적 항의, 특정항의 공복된다

4 정정심판과 정정 항의 라이선스

(1) 시각적 요건

정정 심판은 원심판 계속 항의에 특정권 공복
 가능하고. 정정항의 원심판 계속 항의
 항의에 계속 항의 항의 항의

(2) 항의 시기

정정 심판은 특정권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3) 특정항의 관련

모든 정정 후 특정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항의

- 항의(2) 항의 -
 계속

II 실문(2)

3

1 클래짐 · 法136조 10항

권징 권징이든 소용초차 임논에 이르 인계 개선
사기가 되리기 율기 된다

2 징정 심판 인용심결이 재심사유 요부 (소3)(1) 클래짐 사례

징정 심판 확정으로 항쟁이 바뀌는 것을 인정했다

(2) 권함 사례

징정 심판 인용심결 확정 되어로 판결기 기르 자의로
사실 관계 변화가 있고 항쟁이 확정적으로 소용바뀐
대도 볼 수 없다. 소용리면론을 고려 할 때 징정
인용 심결은 재심사유 요부 가 율기 된다

(3) 김모

명문 정이 인정하고 (소용론) 방어방법 등이 함께
리리만 권함 사례가 적용한다.

(4) 사안의 경우

[판결 기르의 변경]이 항쟁권을 소용바 꾸리 않고
[변론 기일]을 리리 필이나 하므로. 재심사유 요부
아니 라.

3 결론 - 징정된 항쟁을 부안 판결

재심사유 요부 아니 라 징정된 항쟁 판결한다



III 실문(3) 2

1 출제권 - 소용 권리 法 1643 2항

법관은 강사가 권리 신청이 있을 때 소용을 권리
할 수 있다. 소용 권리 해야 할지 묻는다

2 法 1642 심판 제1항 - 대량.

소용 권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판단 허용권
사실상 권리 사항으로 법원이 대량에 적용한다

3 甲 주장의 타당성 (소극)(1) 대심사위 관련 제1항

주로 심판 권리 개별 개선 등 경쟁 심판이
촉진 위해 하더라도 개선사항 - 요구 되지 않는
라고 판단한다

(2) 사안의 경우1) 경쟁 심판 항목 4 기호 변화 (적극)

경쟁 심판 소용호로 인해 기호된 사실이 바뀐다

2) 항쟁적 소용 변화 여부 (소극)

경쟁 물 심판 제도 등이 있는 이상 ~~항쟁적 권리 보기가 없다~~

4 결론 - 甲 주장 부당

소용이면 동 권리 대심사위 요구 아닌 이상. 甲 주장 부당하다



IV 실용(4)

1 음레질 - 권보성 - 특허 2항

기초발견 및 산업발견을 위해 특허 출원을 신청 발명
으로 특허 쉽게 출제되면 안된다. 권보성 문제가 된다

2 결합 발명 권보성 관건 방법

(1) 관건 대상 위수제

각 구성요소가 아닌 위수제 결합의 관계를 가지
고 관건 해야 한다

(2) 관건 방법 위수제

신청 문헌과 하비로 차이 기재 차이를 상세
구분 할 수 있는지 관건해야 한다

(3) 결합유연 위수제

신청 문헌에 결합으로 인한 큰 차이점이
있는지 레방 사건을 살펴 보아 상승효과
유무를 관건 한다

(4) 상승효과 위수제

결합으로 인해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점
권보성은 인정하는 주요한 크기가 된다

(5) 사후적 고찰 크기 위수제

결합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 사례로 쉽게
설시 할 수 있다고 관건해서 안된다

3 사안의 경우

(1) 반박 ① - 권제

실행 문헌 1. 2. 3 에 3성원 A, B, C가
각각 이 권리 지원하는 사권 방으로 권보성
 투쟁 이렇다

(2) 반박 ② - 결함 요인

실행 문헌 1. 2. 3 에는 A+B+C의 결함으로
 인한 상호효과 근을 확인하는데 중요의 기준가
 이렇다.

(3) 반박 ③ - 유기적 결함의 권제

각 3성원 A, B, C 가 특정방으로 권제
 할 때 보다, A+B+C로 인해, 결함으로 인한
상호효과가 인원 되고, 이 본 결함의 기준가 이
 이렇다

(4) 반박 ④ - 사후적 고찰 권리

A+B+C가 이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A, B, C로 분리 A+B+C로 유지 해 서
안 원 하 는
 이렇다.

(5) 결론 - 권보성 인정

A+B+C가 실행 문헌 1. 2. 3으로 분리 가능 한
기준 가 쉽게 변명 할 수 없 다.

10.5

문제-4

I 실문(이)

4.5

1 문제풀이 - 공리 예외 규명 제도 法303

자기 공리에 대한 규제 책으로 일관 요건 하에
공리하기 많은 권으로 보는 제도 이다

2 시기적 요건 충족 여부 (적극)

공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2015. 03. 02로부터 1년 이내. 2015. 03. 03에 했다

3 이사에 의한 공리 여부 (적극)

(1) 이사에 의한 공리 관련 제수제

이사에 의한 공리는 출원권자가 직접 공리 한 것
뿐만 아니라 공리를 용인하여 이사자 또는 권자로
포함 된다

(2) 사안별 경우

2개의 간략화된 공제 2의 후속 공제로 승인
하려는 여부가 필요로 이사에 의한 공리 이다.

4 절차 - 法303 1항 1호 (적극)

출원시 후의 통시하고 30일내 출원 서류 제출
해야 한다. 보정 기간 보정으로 가능 한데 (法303 2항)



복수의 권리 여부가 문제이다.

5 2015.03.27 공리에 공리예외 주장 호격 여부(각각)

(1) 복수의 권리 위상제

최초가 권리가 위상된 경우, 이를 통해 불관한 권리
이 있을 후속 권리가 있으면 중복권이 인정되는
하에 허용하고 있다

(2) 사망의 경우

2015.03.02. 2차 간담회와. 2015.03.27의
2 4명 실연의 권리가 사망이 이므로 복수의
권리권자

6 또 주장 부당 - 결론

甲의 권리 예외 주장 타당하여 주장 부당하다.

II 실문(가) -1)

~~1 개~~

2.5

1 대응 전략 - 개량의 정도

개량 정도에 따라 - 관심성이 같거나 개량이 같다면.

2 개량이 미미한 경우

(1) 국내 우선권 주장에 法55조

출원인 편의를 위해 신출원권을 부여 제정된 법령들은
3개 항목 기초이다

(2) 무권 밀 철거

신출원을 발원수 발원자가가 신출원 최초 명세서 공개시
출원인이 인정으로 변경하고 출원서 취거
3개 신출원 명이 하 변 권과

(3) 사안의 경우

2015.08.03 으로 부 1년 이 내 3개 항 목 중
하 에 X 에 대 해 변 경 하 자

반대

3 X 항 목 이 중 경 우

→ 공 거 에 의 구 상 법 의

신 구 성 의 변 경 이 가능!

(1) 공 거 에 의 구 상 법 의 - 법 303

출원인 편 의 를 위 해 3개 항 목 에 대 한 예 외로
인 정 하 는 제 도 이 다

(2) 사 안 의 경 우 - 이 나 에 의 한 구 상 법 의

2015.08.03 변 경 하 지 나. 2015.03.03 으로 부 1년 이 내 공 거 에 의 구 상 법 에 변 경 하 는.

부 실 문 (2)-2

3.5

(1) 조 약 구 상 법 의 제 도 이 용

(1) 법 543 의 의 취 지

출원인 편 의 를 위 해 조 약 구 상 법 에 변 경 하 는 제 도 이 다



로 소금 찬조 해주는 리노 이다

(2) 보린. 실라.

선출된인인 취성아 권유성이 인장되는 선출된 리노
 명제 서명 로반 법제 내미서 출선해야 하고
 출선제 하기 리노 국가 변형필. 등 법제 리노
 리노이 필요 하도

(3) 사안제 경우

2015. 08. 03 으로부터 1년 이내 모양제
 권국당 해야 하한다. 2015. 03. 02 가기 공리
 가 출제 가 된다.

2 공리 메리 주공 필요성 (적극)

(1) 국내 선출 주공 과 하이

우에 선출 주공 제 경우 선출 제 에서 공기 예제 주공
 시 출제 로 인제 로 법제 로 제 공이 있으나
모양 제 선출 주공 은 그림 제 나내 하도

(2) 사안 제 경우

2015. 03. 02 로 부터 1년 이내 로 출제 하도
모양 제 선출 주공 과 공기 예제 주공 은 해야
중제 를 출제 가 하는 것이 라 (도 303 항 1호)

필요성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문 제 1>

165

I. 설문 (1) 4

1. 간접침해

(1) 의의, 취지 -127

① 특허권이 부당하게 행사될지 안되는 범위 내에서 특허권 실현을 보충위해 타인에게 연성 높은 행위 침해로 본다.

(2) 요건 -127 (1)

물건발명의 경우,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실시 (사용 제1) 하여야 한다.

2. 고유권 담보

(1) 권능행사 상당요건 충족

권능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리권, 상영권, 실용적인 다른 행위가 없어야 하고, 만능이 이론적 실현권, 인식적 사용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다른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권능행사에 다른 구성 부가한 경우 충족

도저히 카드러지 사안에서 권리가 개인적 제로너 권능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간접침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3) 사안

(가) 전용특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나) 다른 부가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전용특허 C를 관여하는 이상, 지정된 기간 동안에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

3. 결론

지 주장 부당하다.

II. 실문(2) 3.51. 권리범위(1) 의의. 취지

① 지적 창작 가치에 많은 자의 재투자계로 특허권 목적에 반하여 위치 ② 특허발명에서 변경된 구성이 특허발명과 전등한 경우 권리성립한다

(2) 근거

명문의 규정 없으나, 취지에 준서 해당된다.

(3) 요건

①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② 작용효과 동일 ③ 구성변경 용이성 ④ 각업인시기를 아는 것, ⑤ 의사적 레이 다양 없을 것 요한다.

2. 전용특허가 전등본인 경우

(1) 간접침해를 본 취회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 127(1)는 물건
 생각에만 사용하는 물건은 생산, 양도 등 하는
 행위에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규정하며, 이러한
 보기는 물건의 생각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특허발명의 권능범위나 권능범위에 있는 것
 유에도 그대를 적용된다.

(2) 사안

(가) 무 특허에서 권능범위이고, 권능범위
 관습한 시를 판례하는 경우에도 127(1)
 의 ~~권능범위~~ ~~양도행위~~ 행위에 포함되어
 간접침해 인정된다.

3. 결론

2 판에 간접침해 해당한다.

표. 실용 (가) S

1. 권리소진

(1) ~~의의. 취지~~

⊙ 과다로운 거래·유동행위 위해 ⊙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이 적법 양도된 경우 그 물건이 특허권 존속 미치지 않는다.

(2) ~~방방발발명 또는 적법 여부 제외~~

방방발발명이 상권적으로 구현된 물건이 특허권과 증언 부러 적법 양도된 경우 방방발발명의 특허권은 이미 목적은 달성하여 소멸된다. 반면, 방방발발명이 권리소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발명자의 방방발발명 사업함으로써 권리소진을 권위하지 되므로 의도적 불행리하다.

(3) 사안

방방발발명인 경우, 특허권과 무이 근거리 C 양도한 경우 이미 특허권 목적 달성하여 소멸된 듯 있는데 그 모든 것도 한다.

2. (가) 권리소진되었는지 여부.

(1) 특허권이 방방발발명인 경우 추정.

⊙ 양도대상이 물건인 경우, 물건발명인

권리소권 범위 적당되며, ② 광범위한 경우
방범발명이 신규로 구현된 물건인지 판단
필수하다.

(2) 가- 광범위한 경우 제외

특허발명이 신규로 구현된 물건인지 여부
는. ① 그 물건이 방범발명 실시 외 다른
영역 있는지, ② 방범발명의 핵심이 모두 구현되
어 있는지 ③ 저희 공장에서 그 물건에 의한 공
정 처리하는 비결 등 전체적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3) 사안

가- ① 방범발명 실시 외 다른 영역 있는지
② 우 특허 핵심의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③ 다른
종류의 공정이 처리하는 비결 크다면
우이 근거에 양도권 인하여 이미 특허권
생각하여 권리위임과 본 것이므로 침해 아니다

3. 결론

가 방범발명 신규로 구현된 물건이면
권리소권되어 침해 아니다.

IV. 설문 (4)

1. 권리범위 대상인상 판 - 135

① 본래 사건 예방, 권리 존경 위해 ② 권리인 대상
발명인이 특허권 권리범위 속한다는 공적 판단 주하는
상판제도이다.

2. 권리범위 대상인상 판 성격 · 상판대상(1) 성격 계획

특허권 권리범위 · 임의성이 미치는 범위를 때
상판대의 관계에서 권리관계를 한정하기 위한
'권리확정'적 성격 갖는다.

(2) 상판대상 계획

상판정규인이 권리인 대상발명인을 통한 발명인이
상판대상이 되기 판정의 목적은 권리인 대상발
명에만 이른다.

3. 권리범위를 상판대상으로 삼은 것 있는 이유(1) 계획

135조에서 권리범위 대상인상 판의 제도 기능, 목
적을 취하여 - 127조 1문에서 특허발명이
발명발명인 경우, 발명에만 실시되는 물건은
생산, 사용 등 하는 행위 권리로 보충하는 제
정 비특허 발명 때, 특허발명 발명의 실시
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상판대상으로 삼아

~~특정 권리범위가 속해있는 여부~~ 또한 ~~주장~~
수 있다.

(2) 사안

~~전동휠~~ C와 대비되는 물건 상판에
상 ~~상~~아 권리범위 ~~권~~인 ~~상~~판 ~~권~~주 ~~권~~수 ~~인~~으로
간접침해 여부도 ~~본 상판에서~~ ~~판다~~ ~~주~~
수 있다.

A 결론

위와 같은 상판권주 적법하다.

<문 제 2>

10.5

1. 서문(1)

4.5

1. FRAND 선언 의미. 취리

- ① 공정·합리적 국제 거래를 위해,
- ② 표준특허는 특정·배타권을 남용해서 안되고
공정·합리적이거나 비차별적으로 실시된 거래하도
를 주장할 국제거래상 약속이다.

2. 킹레능리킹리

(1) 의미. 취리 -126

- ① 특허권 무단 실시하여 침해하는 자에게 ②
전제방해배제권 행사로서 킹레능리하도록 하는 청구
권이다.

(2) 요건

침해자가 현재 특허 킹레능리를 하여야 한다.

3. 무 킹레능리킹리 인용예외

(1) FRAND 선언 관련 제외

특허권특리권이라고 하여 인용권을 킹레능리
 청구 할 수 없다고 하여는 안 되고,
 침해자가 특허권특리권과- 공정·합리적인
 거래 실시계약 체결하지 않고 영연니 실시
 하여 특허 특허 킹레능리는 경우 등 실시하지
 실시경에, 특리권과나 실시계약 체결 경우 등



중립적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안

① 우선 특허권 등록권리와 FRAND 선언
대상이나, 이 것이 무엇 인지 알지 못 하면
안 되고 발명 인지 아 면 이면 이 것이 특 허 권
리 가 있 는 지 를 알 고 판 단 하 는 이
유 형 판 단 을 특 허 권 리 가 있 는 지 를 알 고 판 단 하 는 것 이다.

4. 결론

특 허 권 리 가 있 는 지 를 알 고 판 단 하 는 것 이다.

I. 소론 (2)1. 특허권리행위에서 권리남용 의미

특허권리가 신기술이 권리남용에 해당
되는 경우, 특허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 특허
권과는 특허권에게 특허권리행위 할 수 없다

2. 2. 주권 남용(1) 특허권 남용 부당권 침해

특허권자는 FRAND 조건이 따른 실시권 하여
성실하게 행사 의무 있으나, 계약 조건은 당사
라 사이에 형상 통해 경쟁 하며, 특수
특허권자는 사실 신기술 없이 무인
실시하는 과에게 특허권리행위 하는 것으로
특허권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다.

(2) 특허권 남용 판정방법

FRAND 선언 후 특허권자가 실시 행위
한 형상 의무 준수하였는지 여부, 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이 반대 과도한 실시권 요구
하였는지 예 등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사안

간지 무이 특수 특허권자는 사실 신기술로
특허권 권리남용이라는 2 주 권 남 용 판 정 하 는 사 안.

3. 결론 - 2주권 남용판정

표 10 (3)

3

1. 특허청장이 특허권 (인사청빙법 300조)

(1) 이의 제기

① 인사청빙 절차가 있을 때 개리 특허청과 보로 위계 ② 사정적 권리로서 인정된다.

(2) 양도

① 피양도권 권리 ② 보건의 필연성 인정한다.

2. 피보전권리 종류

(1) 피보전권리

특허청장이 특허권 피보전권리이다.

(2) 사안

특허권으로서 권리내용이 아닌, 그 권리내용이므로, 특허청장이 특허권 피보전권리로서 인정한다.

3. 보건의 필연성 종류

(1) 보건의 필연성 판단 제외

특허청장이 특허권으로서 특허청장은 부각위디우 발생시키는 만능적 가리문으로 가리문 조제무사디 사안라게기 리명적인 손러 발생라게 된 수 있어 보건의 필연성 인정하기 인정되어야 한다.

(2) 특수특리의 권리 제외



FRAND 조건의 라이선스 비용을 다다 있는 라이
 세 가지 강제성이 가려질 경우 제반은 특허
 권과 모든 비유하게 하여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특허 제반 다다 없다면 이는
 형평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3) 사안

특이 특허권 라이선스 사안만을 강제성
 가려질 제반 적용된다.

4. 결론

특이 예외된다.

문 제 3 >

165

I. 본문 (1)

5.5

1. 경쟁제도 취지

무담당판과 취소신청 등 특허권 소멸의
권 수 있는 제도나 대응하여 특허권 유효, 취
소의 제기하여 소멸 미연에 방지하고,
경쟁 전 명세서. 도면 신뢰한 제3자에게
제기 불한 손해 방지 위함 인정된다.

2. 경쟁상판과 변종의 경쟁제도. 취지

(1) 경쟁상판 (133의 2, 133의 3)

- ① 무담당상판에의 경쟁상판 (133의 2),
- ② 취소신청에의 경쟁상판 (133의 3) 있다.

(2) 취지

경쟁상판은 상권 패권권 내까지 상당한
비용, 시간 등 소요되는 바, 무담당판과 취소
신청 결과 내서 함께 상리하여 특허
권리의 방어권 보호 위함이다.

3. 경쟁제도

(1) 경쟁상판, 경쟁상판 공동권

1) 특례권, 호권

특례권만이 청구권 수 있다.

2) 변종 제한



- ① 정정청구, ② 신기술 확장·변경 권리,
 ③ 신규사건 추가 권리, ④ 특허도권 반쪽 (단, 무효
 심판, 취소신청 외 청구항 제외)

(2) 라이선스

1) 시기

- ① 정정청구는 무효심판, 취소신청이 심판된 계
 속 중 할 수 있고, ② 정정심판은 정정청구
 할 수 없는 시기에 할 수 있다.

2) 권리

- ① 정정청구는 무효심판, 취소신청과 함께 권리,
 함께 확장되나, ② 정정심판은 독점권이다.

3) 방법

- ① 정정청구는 불복방법 이므로 무효심판,
 취소신청 심건, 결국 취소하는 심결취소등 제
 기하여 다룰 수 있고, ② 정정심판은 심결취소
 등 제기할 수 없다. (상대방은 정정 무효심판
 권유도 가능하다)

II. 설문(2) 3, 5

1. 정당심결 후 재심 (198 ⑩)

정당심판 인용심결의, 특원부리 신청으로부터 외 '정당심결' 명세서 도면으로 소급 적용된다.

2. 상결 취소소송 대상인 계속적 정당심결 타당성의 경우 취급.

(1) 사실상 변론종결 후 정당심결 타당성의 경우, 상판 대상 취급

정당 심 명세서. 도면이 상결. 타당 대상 된다.

(2) 대상사에 존부 취급

① A51 ①(B)는 판결의 기로가 된 행정처분의 타당성 의미라므로 특정권능은 상판대상이며, 판결의 기로가 된 행정처분 이고, ② 198 ⑩은 모든 항소적, 4항적 후 재 심급 적용시키는 규정 아니며, ③ 대상사에 인용하면, 불응 재결 기연의 은 대상사에 부적한다.

(3) 사안

① 사실 변론종결 후인 대상인 계속적 정당 심결 타당성이므로, ② 상결. 타당 대상 '정당심결' 명세서 도면이며, ③ 이른 기로로 판단해도 대상사에 해당의리 안는다.

3. 결론

'정령 전' 명세서. 도면으로 무효상태 심결
위법 여부 판단한다.

II. 실문 (3) 31.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 164 ①

소송 계속 중 심판 제기된 경우 소송 중의
신뢰할 수 있다.

2. 무효판결(1) 상고의 심리 중단 여부 취척

무효상태 심결 취소소송 계속 중 정령상태
제기된 경우 소송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소송 종료하여야 하는
것 아니고, 심리. 판단 대상 여전히 정령 전 명
세서. 도면이며, 이러한 법리는 무효상태이 특히
법원 계속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사과의 종료신령 있는 경우 취척

법원은 신령과가 정령청구한 취척이 결과
이연을 취척하는 등 특별한 지령 없는 한,
소송 결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안

상고심이 정령상태 결과 -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무이 정경상
판형구를 구동상단 상결축선으로 판형이 영
향이 커진 가능성 크고, 수동 회전축각 아니라
면 받아들이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상기 사항 재량이므로 무 주왕리례는 무당하다.



IV. 실문 (A)

45

1.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1)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방법 제척

- ① 발명 구성요소 각각 공리되었는지 판단
 하여서는 안 되고, ②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 결합
 된 진례로서 구성요소의 근간성 다려보아야 하여
 ③ 이때 현저한 효과 차이 감각 고려 하여야
 한다.

(2) 선형모던 결합모건 제척

여러 선형모던 조합하여 진보성 부정 위례는
결합이 선형모던에 개시되어 있거나 당시
등기 등이 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무 반박 방법(1) 진례

선형모던 1, 2, 3에 특허발명 A, B, C
 가 각 공리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진보성
없다는 판단 하여서는 안된다고 반박 한다.

(2) 결합의 용이성 부정

선형모던 (1~3 예시) A, B, C의 결합이
주요적 개시되어 있지 않고, 당시, 등기
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 하므로써
결합이 용이하리 않다 주장 한다.

(3) 유기적 결합관계

A, B, C가 유기적 결합관계로써 기능과
중心が 전혀하게 ~~상대립하는 것 주장한다.~~

(4) 사후적 근원

서행원인 1, 2, 3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사실은 명세서의 ~~기재된 기능은 아닌 것임~~
을 전제로 한 사후적 근원임을 지적한다.

< 문 제 4 >

10

I. 설명(1)

4

1. 공리에이주방

(1) 리니. 취리 - 30 ①

- ① 사소한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발명 사항이기 때문
- ② 자신의 공리기를 신중, 권위성, 포괄성, 인공발명
상지 않은 주장이다.

(2) 취리

① 의사에 의한 공리에이주방 (30 ① (1)), ② 의사
에 의한 공리에이주방 (30 ① (2)) 있다.

(3) 모건

- ① 의사에 의한 공리에이주방 것과 원리만 다르다
- ② 의사에 의한 공리에이주방, 특허의 취리기제, 증명
서류 제를 말한다.

(4) 사만

15. 3. 2 무은 2과 간당리에서 X 설명
하여 X 공리외었고, 취리 공개행위나 동일성
행위에 있는 15. 3. 27 그이 사공행위에서
X 공개행위에 무이 아닌 그이 공개행위
무이 의사에 의한 공개행위 아닌지 여하 검토
한다.

2. 취리주방 행위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1) 회원이 공개리 알권역의 취척

30조 17항 1조에서 다시 의한 공리에이
주장은 회원의 의사에 의하여 공개 되었으면
특하여, 반드시 회원이 공개 하여야 한다
거나 과실이 발생 라이은 받_는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다만

무이 아닌 지 공개 하였으므로 의사에 의한
공리에이 주장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므로,
주 주장 부당하다.

3. 결론

주 주장 부당하다.

포. 설문(2) - 1)

3

1. 국내의 선권주

(1) 권리, 의무 (5항)

① 개량 발명 보호, 발권 청구, 조약의 선권
권과 영포 영위해 ② 국내 특허권 발명가
개량 발명 확산의 권 신권 위임을 증명한다.

(2) 문건

1) 권리권 문건



출원인 또는 승계인 가능하다.

2) 시기적 요건

선출권일부터 12개월 이내어야 한다.

3) 기술적 요건

선명발명의 최초 명세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기술자가 야완가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취득이)

2 사안

(1) 주체적 요건

출원이 무이

(2) 시기적 요건

X 출원일부터 (2개월 이내인, 16.8.3 이내)

(3) 기술적 요건

X 최초 명세서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야완가리로 이해할 수 있는 X'에 대해 국내 유선권주관 출원 (55) 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보은받을 수 있다.

II 설문(2) -2)

1. 주요 우선권주관 출원

(1) 리더, 후리 (54)

① 국제상호주의, 국제상업 발권 출원 위해 ② 주요 당사국에서 출원한 발명가 동일성 인정되는 발명 판정 상정 상정 상정.

(2) 모건

① 출원자가 주요 당사국일 것, ② 출원성, 정 구성 만족할 것, ③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단, 공리예외주관 수반하는 명목 공리예외 12개월 이내도 만족해야 한다.) ④ 출원인 관 승계인이 출원인 가 여야 한다.

2. 사안

① 일부 주요 당사국이고,

② 출원인인 무이

③ X 공리예외 15. 3. 2 부 12 개월 이 내 인

16 3 2 이 내 에

④ 주요 우 선 권 주 관 출 원 하 여

하 나 의 출 원 인 은 변 경 받 은 수 있 다.

회의성!